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신현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335

발의연월일: 2022. 9. 13.

발 의 자:신현영·강준현·김병기

김병욱 · 김병주 · 김상희

김승원 · 김정호 · 김주영

김회재 • 박재호 • 송갑석

신정훈 • 유정주 • 윤건영

이워택 • 임종성 • 정일영

정필모 · 한준호 · 허 영

허종식 · 홍기원 의원

(2391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"영유아"의 용어 정의를 "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"으로 규정하고 있음. 초등학교 진학 연령은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취학(「초・중등교육법」 제13조)하도록 되어 있고, 취학 전인 2월까지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기 때문에 국가・지 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서도 영유아로 정의하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규정을 벗어난 아동이 존재하게 됨.

이와 관련하여 무상보육 대상인 영유아의 정의가 실질적인 지원 대 상과 상이하여 정책 수행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수정하 여 현행 정책 및 서비스 내용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 이에 영유아의 정의를 종전 6세 미만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으로 변경함으로써 법률 조문과 보육정책 현장의 체계 정합성을 제고하려 는 것임(안 제2조제1호). 법률 제 호
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1호 중 "6세 미만"을 "7세 이하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"영유아"란 <u>6세 미만</u> 의 취학	1 <u>7세 이하</u>
전 아동을 말한다.	
2. ~ 5. (생 략)	2. ~ 5. (현행과 같음)